

양천중앙도서관 및 신월6동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2448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3월 3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에 의거 자치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양천구의회 동의 얻고자 함
- 나. 양천중앙도서관과 신월6동 작은도서관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및 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독서문화 욕구를 반영한 복합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[양천중앙도서관]

- 공사기간 : 2016. 9. ~ 2020. 9. (2021. 1월 개관예정)
- 위 치 : 양천구 신정동 1319-4, 5
- 규 모 : 연면적 5,666㎡, 부지 1,865.7㎡, 지하2층/지상4층
- 주요시설 배치

구분	면적(㎡)	용도
지하2층	1,358.08	· 주차장, 기계실, 전기실, 중앙감시실 등
지하1층	1,096.25	· 다목적실, 보존서고, 문화강좌실, 프로그램실 등
1층	585.84	· 어린이자료실, 유아정보방, 스토리텔링실, 카페 등
2층	878.55	· 소그룹실, 정기간행물실, 간행물실, 청소년자료실
3층	874.38	· 일반자료실, 특화주제코너
4층	873.26	· 디지털자료실, 주민친목실(회의실), 사무실, 매점, 도서관리실
옥상	-	· 태양광설비 등

- 운영인력 : 총25명(사서 19, 전산·시설 등 6) ※ 총 인원 25명 내에서 사서 및 기타인력 상호 조정 가능

[신월6동 작은도서관]

- 공사기간 : 2019. 7. ~ 2021.04. (복합청사 공사시기에 따라 변동)
- 위 치 : 양천구 신월동 581-1외 38필지(신월6동 복합청사 내 1층)
- 규 모 : 249.10㎡
- 추진내용 :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 조성
- 주요시설 배치(안)

구 분	면 적	용 도
일반열람실	109.56㎡	일반도서 열람
유아열람실	30.58㎡	유아도서 열람 및 육아정보방
사 무 실	22.48㎡	사서 근무
독서실(44석)	86.48㎡	청소년·성인 독서실 용도

- 운영인력 : 총 1명(사서)

나. 위탁근거 :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·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」

다. 위탁대상 사무

○ 양천중앙도서관 및 신월6동 작은도서관 운영·시설 관리 전반

- 도서관 개관 준비 및 도서관 운영·시설 관리 전반
(인력채용 · 독서문화진흥사업 · 기타 물품 구입 등)
- 도서대출·상호대차 업무, 도서구매 및 장서 관리
- 도서관 통신망·자료관리시스템·홈페이지 관리·운영 등

마. 위탁기간 : 3년 (도서관 건립 준공에 따라 위탁기간 조정)

바. 위탁체 선정절차 : ‘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’ 심의
사. 소요예산

구분	2020. 8~12월 예산	2021년 연간 예산(추계)	비고
양천중앙도서관	294,173천원	1,626,250천원	
신월6동작은도서관	-	76,820천원	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발췌문 별첨

○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○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·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」 제24조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예산 반영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관 련 근 거

□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것으로 본다.

④ 구청장은 재위탁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즉시 양천구의회에 통보한다.

□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·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

제3장 민간위탁

제24조(민간위탁 등)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(이하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수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를 결정하며 수탁자 선정과 관련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에서 설립한 공단이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⑤ 수탁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은 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